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7

2022년 12월 22일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서상열 의원(찬성의원 11명)
나. 제 안 일 : 2022년 10월 17일
다. 회 부 일 : 2022년 10월 21일
라. 상 정 일 :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
2022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서상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동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개선, 공공일자리 창출,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·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제정되었음.

○ 그러나 1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분석이 없어 마을관리소 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근거가 부족한 점, 주차장 등 주민생활시설의 경우 자치구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바 자치구 사무기능에 대해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

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이를 운영함으로써 시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,

○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(서울가꿈주택사업, 골목길재생사업 등)과도 추진목적이 유사하여 예산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후 마을관리소 사업이 종료된 바,

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(2022. 10. 27. ~ 10. 31.) 결과

※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총 53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, 제출된 의견은 모두 조례안 폐지을 반대하는 의견임.

입법예고결과 주요 의견요약서	
조 문 **(폐지 조례안)**	**주 요 의 견** (모두 반대의견으로 찬성의견 없음)
폐지 조례 배경 (제안이유)	- **마을관리소는** 주경환경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이 **공동체의 힘으로 환경을 개선**하고 **주민의 삶의 질 개선**에 필요한 활동을 전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센터임. 지자체와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며, 공공의 주요한 책무임. - 서울시의 주거환경 취약계층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**주민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**함. - 저층주거지의 경관을 유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, 그 주체가 주민 스스로가 되는 이러한 법은 유지하고, 오히려 더욱 많은 사례를 만

	들어 모델화해야 함. **1년간 시범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전부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음**. 적어도 5년 이상의 시범사업 기간을 두어야 정량, 정성적 데이터가 쌓이기 마련임. - 저층주거지에서는 마을관리소가 꼭 필요함. **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뺏는 서울시가 되어서는 안 됨**. - 도시재생과 각종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공공서비스에 포함되지 못하는 주거 지원 사각지대임. **고령화, 노후 주거환경, 쇠퇴지수가 매우 높은 곳에는 마을관리소가 필요**함. - **노후된 빌라 주택에 사는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도움**이 되는 일임. 국가가 다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소외된 이웃에게 필요한 일이니 절대 폐지하면 안됨. - 마을관리소는 단독주택 중심의 주민들이 **골목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의 안전, 환경개선, 주민복지와 일자리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**하고 있음. **소규모 예산으로 마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**이라고 봄. 서울시에 이 조례가 있으므로 유사 정책을 통합관리 할 수 있기 때문임. - 오래되어 닳고 딱딱해져 부러지기까지 하는 장판과 곰팡이가 가득한 벽으로, 생활이 너무 불편하지만 여건이 안되어서, 그저 참는 수밖에 없는 **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주민 분들께 마을관리소는 꼭 필요**함. **< 열린사회북부시민회 의견 >** - **저층 주거지 내의 사람, 환경, 일거리, 지역문제 해결 등** 마을관리는 중요하므로, 이를 활성화 하고 **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**함. - 사업성과가 없다는 것은 운영을 위한 **조례만 있고 행정적 지원이 없었기 때문**임. 또한 모델을 만들고 있는 1호 마을관리소는 시범사업에 배제되어 성과를 얻지 못한 사유이기도 함. -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분석이 없다고 하였는데, **서울시 담당부서가 직무를 유기**한 것이며, 조례를 폐지할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됨. - 마을관리소는 처음 시작하며 만들어가는 만큼 **서울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방향을 사업내용을 정하고 지원**하는 것이 맞음. - 가꿈주택, 골목길 사업과 유사하다 해도 이는 적은 단위의 사업으로 파급력 낮음. **저층 주거지 문제는 시급히, 장기간 해결해야 할 문제**로,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할 것임. **저층주거지 사업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시도**를 해주길 바람. - 위와 같은 이유로 **조례 폐지에 반대**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○ 본 폐지 조례안은 2021년 5월 20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○ 동 조례는 제정당시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개선, 공공일자리 창출,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·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.

○ 동 조례 제6조(마을관리소의 설치·운영)에 따라, 마을관리소는 집수리, 골목길 정비,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, 주민공동이용시설, 주차장,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, 마을물류, 마을돌봄,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음.

〈 마을관리소 사업 개요 〉

□ **추진근거**

○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(2021.5.20.)

□ **추진목적 - '마을관리소 운영지원을 통한 마을관리 토탈서비스 제공'**

○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통합적 역할 수행

○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연결된 주민 관계망을 토대로 생활편의 서비스 제공

○ 마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관리소로 성장·발전

○ 기존 도시재생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대안으로서의 「마을관리소」

□ **추진개요**

○ 대상지역 :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'저층주거지'에 마을관리 수요가 있는 지역

○ 사업내용

- 주거환경 개선 사업 (소규모 집수리 사업, 주택관리 등)

- 골목환경 개선 사업 (무단투기 쓰레기 청소, 제설함 정비 등)
- 주민공동체 형성 (주민 네트워크 형성, 참여주민 교육 등)
- 생활편의 서비스 (마을택배, 감병 예방 방역활동 등)
- 안전관리 서비스 (주차장 관리, 등하교 지원, 야간 방범활동 등)
- 주민역량 강화사업 (생활밀착형 집수리 교육, 골목관리 교육 등)
- 거버넌스 구축 및 연계 (주민자치회와 마을관리활동 협업, 돌봄SOS주거서비스 연결 등)

○ **추진절차 (2021년)**

마을관리소 운영주체 모집 →	**사업설명회** →	**서류심사 및 현장심사**
8월 ~ 9월	8월	9월
보조금심의위원회 →	**최종선정 공고** →	**예산교부 및 사업추진**
9월	9월	~12월

※ 시범사업 예산은 1억원 편성하여 5천 5백만원 집행함(2022년도는 예산편성 없음).

※ 출처 : 행정국 제출자료

○ 본 폐지 조례안은 시범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 미흡, 자치구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획일적 사업추진, 서울시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우려 등으로 시범사업이 종료된 점 등을 폐지 이유로 밝히고 있음.

〈행정국 의견〉

마을관리소사업은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관리와 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2021년 시범사업 실시되었으나,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**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중복문제 등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종료**되었음.

본 폐지조례안은 **마을관리소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는 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**하고자 함으로, 금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또한, 사업 실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사업을 종료하고 기존의 유사 목적을 가진 사업(서울가꿈주택사업, 골목길재생사업 등)과의 예산 중복투입 소지를 제거하여 예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.

〈서울가꿈주택사업 개요〉

1 집수리 보조사업

- **사 업 명 : 2022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사업**
- **대상지역 :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**
- **사업내용 : 대상지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**
  - 단독, 다가구 : 공사비의 50%, 최대 1,200만원
  - 다세대, 연립 : 공사비의 50%, 공용부 최대 1,700만원, 전유부 최대 500만원
  - 담장, 쉼터 공사 : 공사비의 100%, 50~300만원
- **대상주택 :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한 저층주택**
  - 단독주택(다중·다가구 포함) :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억 5천만원 이하
  - 공동주택(다세대·연립) : 개별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 이하
- **모집기간 : 2022. 4. 29. ~ 2022. 5. 13. (모집공고 : 2022. 4. 7.)**
- **지원금액**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지원범위</th><th rowspan="2">지원비율</th><th colspan="2">최대 지원금액</th></tr>
<tr><th>일반지역</th><th>개발 추진지역</th></tr>
<tr><td>1. 단독주택
(다중·다가구주택 포함)</td><td>1-1. 성능개선 집수리
(지붕, 방수, 외부창호, 단열, 설비 등)</td><td rowspan="2">공사비용 50%
(취약계층은 80%)</td><td>1,200만원</td><td>600만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2. 공동주택
(다세대·연립주택)</td><td>2-1. 개별세대 전유부분 성능개선 집수리
(외부창호, 내단열, 설비 등)</td><td>세대별
500만원</td><td>세대별
250만원</td></tr>
<tr><td>2-2. 공용부분 성능개선 집수리
(지붕, 방수, 외부창호, 외단열, 설비 등)</td><td>공사비용 50%</td><td>1,700만원</td><td>850만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3. 외부공간
(1, 2 모두 해당)</td><td>3-1. ①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</td><td rowspan="2">공사비용 100%
①, ② 중 택1
(중복지원 불가)</td><td rowspan="2">① 300만원
② 150만원</td><td rowspan="3">-</td></tr>
<tr><td>3-2. ② 도로에 면한 담장철거 후 재조성
(1.2m이하)</td></tr>
<tr><td>3-3. 쉼터 또는 화단 조성
(모든 사람이 이용 또는 조망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)</td><td>공사비용 100%</td><td>50만원</td></tr>
</table>

2 집수리 융자, 이자지원

○ 융자지원 :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, 최대 6천만원(연 0.7%)

○ 이자지원 : 서울시 전 지역, 최대 6천만원(시중금리 중 최대 2% 이자 지원)

구 분		집수리			신 축	
		단독, 다중	다가구	다세대, 연립	단독, 다중	다가구
지원한도		6천만원	3천만원 (최대 2호)	3천만원 (세대당)	1억원	5천만원 (최대 6호)
		보증			담보	
지원시기		준공 시 100%			착공 시 50%, 준공 시 50%	
지원 방법	융자 지원	◦ 대상지역 :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◦ 대상주택 :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◦ 적용금리 : 고정금리(연 0.7%) ◦ 상환방식 :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(중도상환수수료 없음)				
	이자 지원	◦ 대상지역 : 서울시 전 지역 ◦ 대상주택 :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◦ 적용금리 : 시중금리(변동금리) – 서울시 : 시중금리 중 최대 2% 이자 지원 – 신청인 : 서울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부담(0.7% 이상) 예시) 시중금리가 3.49%인 경우 서울시 2% 지원, 신청인 1.49% 부담 ◦ 상환방식 : 5년 균등분할상환(중도상환수수료 있음)				

〈골목길재생사업 개요〉

□ 사업 개요

○ **사업기간 : '18.08. ~ 계속사업** ※ 1개소당 3년 / 10억원 내외 지원

○ **총사업비 : 550억원**('18년 26억 / '19년 50억 / '20년 190억 / '21년 171억/'22년 113억)

- '22년 예산 : 자치구 공모사업 111억원('20,'21선정지) 기타사업 2억원

○ **사업내용 : 골목단위 생활환경 개선, 골목경제 활성화 등**

○ **사업방식 : 자치구 대상 공모**(공모유형 : 전략사업형, 사업연계형, 일반형)

○ **사업현황**

총 선정개소	사업완료	사업중		사업지 선정철회
		공사중	실행계획수립중	
56	22	18	8	8

※ 출처 : 주거환경개선과(서울가꿈주택사업), 균형발전정책과(골목길재생사업) 제출자료

○ 다만, 마을관리소 폐지는 저층주거지의 환경개선, 공공일자리 창출, 생활불편 해소 등의 필요성은 상존하는 만큼, 1년간의 사업시행 평가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며, 무형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, 공동체 스스로 마을을 돌보고 관리하는 주민 자치역량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(입법예고결과 의견 中) 또한 공존하고 있음.

※ 서울시는 동 조례안 제정이후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(강북구 삼양동, 관악구 대학동)을 실시한 바 있음.

〈 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추진결과 〉

- 2022.4.25. 지역공동체과 내부 보고자료(2021년 마을관리소 시범사업 정산보고) 발췌

1. 강북구 삼양동

☐ **사업추진 결과 : 정상추진**

○ 공동체 의식 함양 위하여 다양한 마을관리소 활동 전개

○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·단체 협력

○ 향후 계절별 마을관리소 과제 모색하여 자발적 주민활동 지속 계획

세부사업	계획 대비 실적			
① 골목관리사 활동	목표	○ 지역내 골목길을 살피며 위험요소 제거 및 주민 편의성 제공		
	성과지표	지표	실적	비고
		- 문제 발굴과 해결 방향제시 25회 - 연구모임 2회 - 사업의 성찰과 논의 3회	- 문제 발굴과 해결 방향제시 36회 (3팀구성,팀당 1달/4회활동*3달) - 마을길 문제점 연구모임 1회 - 사업의 성찰과 논의 1회	추진 양호
② 주거환경 개선사업 (집수리활동)	목표	○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도움으로 삶의 질 향상		
	성과지표	지표	실적	비고
		- 방충망정비 5건 - 단열용품 설치 10건 - 기타 잔수리 10건 (수도,전기,도배등)	- 방충망/방범창정비 11건 - 단열용품 설치 7건 - LED등교체 4건 - 기타 잔수리 16건 (수도,전기,도배등)	추진 양호
③ 사회편익 서비스사업 (방역활동)	목표	○ 집안 해충을 박멸하고 골목길 방역을 통해 공동체의 해결 능력함양		
	성과지표	지표	실적	비고
		-가정 내 방역 5회 -공동체 위주 방역 5회	- 가정내 방역 2회 - 관내어린이집 2회 - 복지센터,사경센터 2회	추진 양호

세부사업	계획 대비 실적			
			- 쉼터및공원 3회 - 기타 골목길방역 4회	
④ 골목환경 개선사업 (골목관리사활동)	목표	○ 골목길 대로변 집 앞 화분걸이 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정원 조성		
	성과지표	지표	실적	비고
		- 화분 및 화단 관리 2회 - 무단투기지역 화단구성 2회	- 화분 및 화단 관리 2회 - 무단투기지역 화단구성 1회 - 골목길 목재계단관리 2회 (쉼터 1곳,골목 계단 1곳)	추진 양호
⑤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(마을순찰활동)	목표	○ 주민 스스로 순찰활동을 통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 반들기		
	성과지표	지표	실적	비고
		-우범지역 위주 순찰활동 10회	-마을순찰활동 진행 14회 (A팀2회,B팀2회,A,B팀 10회)	추진 양호

2. 관악구 대학동

☐ 사업추진 결과 : 정상추진

○ 실질적인 생활 편의 제공

○ 중장년 1인 가구 소모임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

○ 본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 관리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기업으로 발전 모색

세부사업	계획 대비 실적			
① 주거환경 생활편의 UP	목표	○ 대학동 주민의 주거환경 생활편의 증진 (대상 : 대학동 노후 주택, 고시원, 원름 주민)		
	성과지표	지표	실적	비고
		- 주거 생활편의 지원 총20회 (주택수선, 청소방역, 이사지원)	- 마을부엌 누수 방지 공사 1회 - 청소 방역 32회 - 이사 지원 미실시	추진 양호
② 골목환경 생활편의 UP	목표	○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도움으로 삶의 질 향상 (대학동 비탈진 골목길에 제설함 겸 의자 제작 설치)		
	성과지표	지표	실적	비고
		- 제설함 설치 5개 - 골목길 청소 12회	- 제설함 제작, 염화칼슘 비치 - 골목 및 마을공간 청소 (주1회) 15회	추진 양호
③ 주민공동체 네트워킹 UP	목표	○ 대학동 주민 공동체 네트워킹을 통한 마을 화합		
	성과지표	지표	실적	비고
		- 주민네트워킹 워크숍 3회 - 민관 협력 워크숍 1회 - 마을 신문 발행 및 배포 1회 - 나눔 물품함 제작·설치·운영	- 비전 워크샵 등 3회 - 22년 협치과제 워크샵 1회 - 마을 소식지 1회 - 나눔 물품함 제작·설치·운영 (물품 나눔 3회, 회당 120여명 참여)	추진 양호

세부사업	계획 대비 실적			
④ 주민건강, 생활,문화 UP	목표	○ 대학동 주민 건강. 생활. 문화. 질적 개선		
	성과지표	지표	실적	비고
		- 복지강좌 1회 - 취업 정보 교육 2회 - 요리 교육 3회 - 공예 교육 2회	- 복지 강좌(정신건강) 1회 - 취업정보 교육(노동인권, 금융복지) 2회 - 요리 교육(김장, 깍두기, 반찬) 3회 - 공예 교육(꽃꽂이, 추가실시) 3회 - 건강 교육(물리치료,건강강좌) 5회 - 병원 동행 서비스 11회 - 미술 치료교실 2회	추진 양호

○ 한편,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(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,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)의 경우 마을관리소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, 타 지역 운영사례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○ **경기행복마을관리소**

- 현재 95개소 운영중
- 사업예산 : 1개 소당 평균 약 3억 7천만원
- 2019년「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
- 인력구성 : 기간제근로자 10명 내외

※「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
제7조(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) 행복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.

1. 행복마을지킴이의 활동 중심 거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지원
2. 택배보관 및 전달, 공구대여 등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활동
3. 동네환경개선 지원
4.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거점
5. 지역주민 문화 활동 거점
6. 관련 부서, 기관과 협업 추진
7. 그 밖에 주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여하는 역할

○ **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**
- 현재 29개소 운영중
- 사업예산 : 1개 소당 평균 약 4천 8백만원
- 2019년 「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정
- 인력구성 : 약 10명 내외(공공근로자, 자원봉사자, 사회복지사, 기간제근로자)

※「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
제4조(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)
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.
1. 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(이하 “집수리 서비스”라 한다) 제공 및 지원
2.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
3. 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체 구성 및 협의 지원
4.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
5.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
6.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, 꽃길 조성,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
7. 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
8.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

○ 종합적으로, 동 조례안의 폐지 여부는 시범사업 평가의 적정성 여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과,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의 정책적 소외 가능성, 마을 관리에 있어 주민 자치역량 약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
○ 아울러, 조례 폐지 방안 외에 전면개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다 개선된 사업추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8명, 6명 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이 조례안이 통과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, 마을관리소라는 것은 특히 서울시의 각종 노후된 저층 주거지들을 관리하고 마을이 유지되는 데 역할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충분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으면서 시기를 봤다가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데 우리 의회가 협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,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임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(서상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7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10월 17일
발 의 자 : 서상열 의원(1명)
찬 성 자 : 고광민, 김길영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환희, 유만희, 유정인, 장태용, 채수지, 허 훈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○ 동 조례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개선, 공공일자리 창출,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·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1년 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제정되었음.

ㅇ 1년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평가와 분석이 없어 마을관리소 사업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근거가 부족한 점, 주차장 등 주민생활시설의 경우 자치구에서 설치·운영하고 있는 바 자치구 사무기능에 대해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마을관리소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광역적으로 이를 운영함으로써 시주도의 획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,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사업(서울가꿈주택사업, 골목길재생사업 등)과도 추진목적이 유사하여 예산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개소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후 마을관리소 사업이 종료되었음.

ㅇ 따라서 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